

#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의 번	안 호	358
--------	--------	-----

제출년월일 : 2002.

제출자 : 김포시장

## □ 제 목 :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 □ 제정이유

-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지역 청소년에게 개방형 청소년 전용 공간을 확보하여 건전한 문화, 예술, 정보, 취미활동, 동아리 모임으로 인한 열린 청소년문화의 장을 보호·육성시키 나가는데 있음

### □ 주요골자

-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을 정합(안 제3조)
-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사업을 정합(안 제4조)
-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에 대한 사항 명시(안 제5조, 제6조)
-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의 위탁에 대한 사항 명시(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 □ 조례제정안 : 민침

### □ 관계법령 말해서 : 민침

### □ 기타 참고사항 : 민침

### □ 사진입법예고 : 비대상

##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청소년기본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청소년문화의집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시설) 청소년문화의집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서비스지원공간
2. 문화정보공간
3. 문화체험공간
4. 문화창작공간
5. 문화생활공간
6. 기타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 욕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시설

제4조(사업) 청소년문화의집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관리·운영
3. 청소년의 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4.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위하여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제4조의 청소년문화의집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7조(이용료)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의 이용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5조에서 규정한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문화의집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을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청소년문화의집 수탁자는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소유한 직원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제9조(운영계획의 승인) 수탁자는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운영시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청소년문화의집 기본운영목적과 사업에 적합하게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0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물 운영과 관련한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때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때

3. 청소년문화의집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때

4.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자료·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통진청소년문화의집	김포시 통진면 도사리 434-6 (김포시통진문화회관 2층)